선거교육지원법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55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채현일・이해식・모경종
양부남・이광희・복기왕
장철민・강준현・김병주
박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 허위・왜곡 정보가 급증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선거 정보에 대한 판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의 하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관계로 교육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교의 선거교육은 명확한 교육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선거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선거연수원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선거교육을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운영함(제9조).

라. 선거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0조).

마.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학교 교육과정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공개하며, 교원 대상 학교 선거교육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회 선거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장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선거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교육의 기본원칙) ① 선거교육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선거교육은 공정과 중립을 담보하여야 하며,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선거교육은 국내·외, 학교 및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교육”이란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미와 중요성,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의 이해, 투표 및 개표의 절차와 방법,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등 선

거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이해하게 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선거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행하는 선거교육을 말한다.

3. “사회 선거교육”이란 학교 선거교육을 제외한 모든 선거교육을 말한다.

제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거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선거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4. 선거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

5. 선거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6. 선거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그 밖에 선거교육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거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선거교육기본계획 등

제7조(선거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선거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거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선거교육 사업의 추진계획
3.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4. 선거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교육내용·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선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선거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망의 구축·운영

7. 선거교육 실태의 조사・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선거교육의 시행・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선관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선관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선거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연수원의 장(이하 “선거연수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선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난 연도의 추진실적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선거교육담당관)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② 선거교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에 맞는 선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2. 지역 선거교육 수요자에 대한 교육

3.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간의 협력망 구축·운영

4. 지역의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선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교육담당관의 지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선거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선거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선거교육 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선거교육 전문인력 및 민간 선거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3. 선거교육의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수 지원

5. 선거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

6. 온라인선거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진흥원은 지역 선거교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하는 선거교육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⑩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선거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⑪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선거교육의 지원 등

제11조(선거교육 연구·개발)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에 관한 정책과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선거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을 행할 역량을 갖춘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에게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거교육 전문인력은 진흥원이 개설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 선거교육의 진흥) ① 국가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교선거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관위원장은 학교 선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학교 선거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과내용의 반영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선관위원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관위원장은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2.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⑤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2.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모의 체험교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회 선거교육 지원)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회 선거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등 사회 선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관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 사업의 시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및 공공단체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단체등을 말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교류·협력 증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